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1781

제안연월일 : 2024년 5월 3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안을 반영하여 이해당사자의 기피 신청에 대하여 기피여부를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고, 제척이나 기피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위원은 평가·심의에서의 회피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이해당사자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위원회 의결로 결정함(안 제10조제2항).

2) 제척 또는 기피된 위원은 해당 심의·평가에서 스스로 회피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0조제3항).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 심의·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안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수정 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 하나의 사안을 심의·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개정안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② 위원회 심의·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 심의·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③ -- 본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제척·기피 ---------- 경우 ---------- 심의·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그의”를 “그가”로, “보관에 속하는”을 “보관하는”으로, “형식을 빌어”를 “형식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직영기업”을 “직영기업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금융기관 중 시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을 “제1호의 금고를”로 한다.

제3조 중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으로,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금고의 약정기간)”을 “(금고약정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금고의 약정기간은”을 “금고약정 기간은”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금고의 지정방법)”을 “(금고지정 방법)”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위원”을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1)부시장이 맡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하되”를 “임명 또는 위촉하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제4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5항) 중 “위촉된”을 “임명 또는 위촉된”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평가”를 “하나의 사안을 심의·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 심의·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을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로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맡고, 서기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맡는다.

제12조제1항 중 “금고 참여의사”를 “금고지정에 참여의사”로, “공고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금융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를 “공고하고, 이를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로 한다.

제13조 중 “금융기관에서”를 “금융기관이”로,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을 “정부기관(금융감독원 등) 또는”으로, “자료와”를 “자료 및 제7조에 따른 평가기준과”로, “작성,”을 “작성하여”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시보”를 “서울시보”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를 “금고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금고"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지방회계법」 제38조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 그가 ---------- 보관하는 ---------- 형식으로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특별회계"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3. ---------- 직영기업이나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시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5. ---------- 제1호의 금고를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시 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지방공기업법」----------.
제5조(금고의 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5조(금고약정 기간) 금고약정 기간은 ----------.
제6조(금고의 지정방법) (생 략)	제6조(금고지정 방법)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9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1)부시장이 맡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임명 또는 위촉하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삭 제>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	③ ---------- 임명 또는 위촉된 ----------.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 하나의 사안을 심의·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 심의·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은---------- ---------- ---------- 해당 안건의 심의·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생 략)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맡고, 서기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맡는다.
②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 -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
제12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① 시장은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울시보 등에 공고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금융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	제12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① ---------- ---------- ---------- ---------- 금고지정에 참여의사---------- ---------- ---------- ---------- 공고하고, 이를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 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평가표를 작성, 기존에 운영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 ---------- 금융기관이 ---------- 정부기관(금융감독원 등) 또는 ---------- 자료 및 제7조에 따른 평가기준과 ---------- 작성하여 ----------.
제15조(금고약정)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시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15조(금고약정) ① ---------- ---------- 서울시보----------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금고약정의 해지) ① 시장은 금고 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에 따라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6조(금고약정의 해지) ① ---------- ---------- ---------- ---------- ---------- 금고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